

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

1.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본사항(「법인세법」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사항)

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	--	-----------	--

2. 신수탁자 선임(「법인세법」 제109조의2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)

[] 새로운 수탁자 선임 (「법인세법」 제109조의2제1항)

[] 전수탁자의 임무 종료 (「법인세법」 제109조의2제2항)

가. 새로운 수탁자(신수탁자)

③ 명칭		④ 사업자등록번호	
⑤ 대표자		⑥ 사업장소재지 (본점·주사무소)	
⑦ 선임일(승계일)		⑧ 선임사유(종료사유)	

나. 전 수탁자

⑨ 명칭		⑩ 사업자등록번호	
⑪ 대표자		⑫ 사업장소재지 (본점·주사무소)	

3. 대표 수탁자 변경(법인세법 제10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)

가. 변경 후 대표수탁자

⑬ 명칭		⑭ 사업자등록번호	
⑮ 대표자		⑯ 사업장소재지 (본점·주사무소)	
⑰ 변경일		⑱ 변경사유	

나. 변경 전 대표수탁자

⑲ 명칭		⑳ 사업자등록번호	
㉑ 대표자		㉒ 사업장소재지 (본점·주사무소)	

「법인세법」 제109조의2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2.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. 대표수탁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
-------	--